

# 학교법인 상산학원

## 제314회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8명
감사정수	2명	재적감사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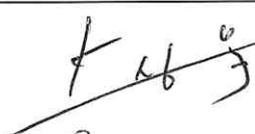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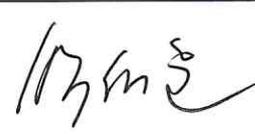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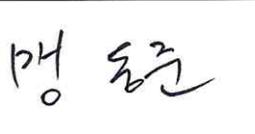
1. 회의 소집 통지일 : 2024년 3월 8일
2. 회의 일시 : 2024년 3월 18일 10:30~11:20
3. 회의 장소 : 학교법인 상산학원 화상회의실(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30)
4. 참석 임원
  - 이사 : 이사장 홍상욱, 이사 신철순, 김성길, 이현구, 최병선, 박세훈, 맹동준(7명)
  - 감사 : 박지원, 김용권(2명)
5. 불참 임원
  - 이사 : 전창후(1명)
6. 관계자
  - 학교장 국중학, 교감 손성호, 법인실장 김연수, 주무관 강정화(4명)
7. 회의 안건
  - 1)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처분(안)
  - 2) 2024회계연도 제1회 법인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회의 내용

법인실장 김연수 : 성원 보고(이사 8명 중 7명 참석, 감사 2명 중 2명 참석)

이사장 홍상욱 : 회의 개최(성원이 되어 회의 개최를 선언하다(의사봉 3타)) 및 인사  
 (일주일 전 이사회 소집 통보 시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사회는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전회 회의록 확인에 앞서 2024.3.1.자로 임용된 국중학 교장을 소개하면서 인사 말씀을 요청하다.

학교장 국중학 : 안녕하세요. 지금 뵙지는 못하지만 홍성대 설립자님, 홍상욱 이사장님과 이사, 감사님들께 새내기 교장으로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3주간 저와 관련 해서 많은 기대와 성원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부담을 경험하는 시

간 서 명	홍상욱 이사장	박세훈 이사	맹동준 이사
			

간이었습니니다.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학생 교육에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홍상욱 :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회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전회 회의록은 모든 임원에게 사전에 보내준 내용이기에 모두 확인해 보셨으리라 믿으며, 전회 회의록의 내용 중에 오자, 탈자,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승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 이현구 : 제313회 이사회 회의록을 우편으로 받아 살펴본바, 사실과 다름없이 잘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 박세훈 : 이현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장 홍상욱 : 다른 의견 유무 확인하다.(이사 일동이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제313회 이사회 회의록은 이현구 이사의 동의와 박세훈 이사의 재청이 있었으며,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 없이 접수되었음을 선포하다.  
(의사봉 3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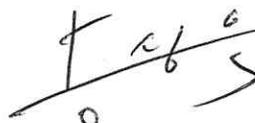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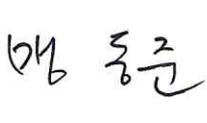
심의 안건 2건 중 제1호 안건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처분(안)'을 상정(의사봉 1타)하고, 김연수 법인실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법인실장 김연수 : 우리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토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247-1, 248-1, 251번지)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및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종로구에서 실시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인 공평구역 1·2·4 지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에 따라 2014.1.28. 수익용기본재산(대지 253.9㎡)을 8,463,330,000원에 처분(매각)하고, 정기에금으로 예치·운영하여 왔음.

2014.02.사업연도 공익법인 세무신고 시(세무·회계사에게 업무 위탁) 처분 이익금(6,980,392,000원)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처리하여 신고하였으나, 2023.12.7. 광주지방국세청이 2014.02.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 미사용한 금액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를 함.

그러나 우리 법인은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686,167,733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전주세무서로부터 국세(법인세) 2,128,724,480원을 납부 통보받았음.

그리고 국세(법인세) 납부 후 약 1개월 후 전주 완산구청에 국세(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212,872,440원(가산세 미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나 지방세(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의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제

	홍상욱 이사장	박세훈 이사	맹동준 이사
간서명			

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에 가산세 감면 신청을 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함.

따라서 국세(법인세) 및 지방세(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총 2,341,596,920원 납부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예금) 2,341,596,920원을 처분하기 위해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임을 회의서류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다.

이사장 홍상욱 :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처분(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이 사 맹동준 : 2022년 조세심판례를 살펴본 결과, 타 학교법인의 경우로 이 학교법인도 우리 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채택되었으며, 우리 법인도 과세전적부심청구 결과가 동일하게 나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등에 대해서는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법인처럼 6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도 상당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유권해석에 있어서도 2021년 2월에 들어서 해당 예금을 삭제했다고 함.

따라서 우리 법인이 회계 처리를 할 당시에는 기존의 유권해석에 기초해서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우리 법인이 가산세를 면제 받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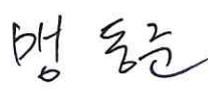
이 사 김성길 : 우리 법인으로서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을 고려한다면 기한 내에 일단 납부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에 동의하며, 추후에는 업무 처리 시 해당 분야 다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근거 등을 마련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 사 이현구 : 김성길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장 홍상욱 : 다른 의견 유무 확인하다.(이사 일동이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제1호 안건은 김성길 이사의 동의와 이현구 이사의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1호 안건인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처분(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이어서 제2호 안건 '2024회계연도 제1회 법인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의사봉 1타)하고, 김연수 법인실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간 서 명	홍상욱 이사장	박세훈 이사	맹동준 이사
			

법인실장 김연수 : '2024회계연도 제1회 법인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995,000천원 보다 2,342,419천원이 증액된 3,337,419천원으로 편성했음을 자세히 설명하다.

이사장 홍상욱 : '2024회계연도 제1회 법인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개진 요청하다.

이 사 박세훈 : 원안대로 처리할 것에 동의하다.

이 사 이현구 : 박세훈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장 홍상욱 : 다른 의견 유무 확인하다.(이사 일동이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제2호 안건은 박세훈 이사의 동의와 이현구 이사의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2호 안건인 '2024회계연도 제1회 법인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유무 확인하다.(이사 일동이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그럼 회의록 간서명을 위한 대표 3인을 호선해 줄 것을 주문하다.

이 사 이현구 : 홍상욱 이사장과 박세훈, 맹동준 이사를 추천하다.

이 사 김성길 : 이현구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이 사 신철순 : 김성길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이사장 홍상욱 : 다른 의견 유무 확인하다.(이사 일동이 이의 없다고 대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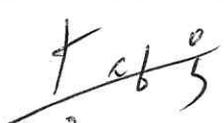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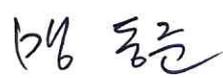
그럼 간서명 호선은 김성길 이사의 동의와 신철순 이사의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어 위 3인이 간서명 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2024.4.2.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현구 이사님에게 인사 말씀을 요청하다.

이 사 이현구 : 저는 상산에 와서 여러분들과 맺은 인연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그 인연 소중히 잘 간직하겠습니다. 선생님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상산의 앞날을 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홍상욱 : 이사장이 회의 마무리 인사를 하다.(제314회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의사봉 3타))

작성자: 주무관 강정화

	홍상욱 이사장	박세훈 이사	맹동준 이사
간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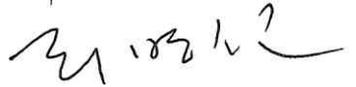
이사장 홍상욱 

이 사 신철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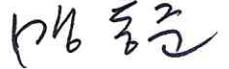
이 사 김성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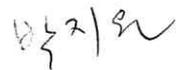
이 사 이현구 

이 사 전창후(불참)

이 사 최병선 

이 사 박세훈 

이 사 맹동준 

감 사 박지원 

감 사 김용권 

간 서 명	홍상욱 이사장	박세훈 이사	맹동준 이사
			